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기이전공공기관에도 적용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1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期)이전공공기관에도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 적용(안 제29조의5)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11.

다. 회 부 일 : 2026. 5.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Ⅲ. 검토의견

1. 기(期)이전공공기관에도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 적용(안 제29조의5)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5(<u>이전공공기관</u> 의 우선 구매) ① <u>이전공공기관</u> 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u>이전공공기관</u> 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9조의5(<u>이전공공기관등</u> 의 우선 구매) ① <u>이전공공기관등</u> ----- ----- <u>이전공공기관등</u> ----- ----- ----- -----.
② 제1항에 따른 <u>이전공공기관</u> 의 장은 <u>이전공공기관</u> 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u>이전공공기관등</u> ----- -- <u>이전공공기관등</u> ----- ----- ----- ----- ----- -----.
③ 제1항에 따른 <u>이전공공기관</u> 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이전공공기관등</u> ----- ----- ----- ----- -----.

현행법 제29조의5는 이전공공기관¹⁾의 장에 대하여 이전하는 지역에서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라 함)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제1항),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제2항) 하는 등,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안 제29조의5는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에서 “이전공공기관등”²⁾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³⁾에 따른 혁신도시시책(舊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 수립되기 전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수도권 소재 기관 등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관(이하 “기이전공공기관”이라 함)에 대해서도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이전공공기관의 지정 현황⁴⁾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현행 150개(8쪽 ‘참고’)에서 171개 기관으로 확대됨.

【 이전공공기관등의 범위 】

이전공공기관등		
(A + B)	이전공공기관(A)	기이전공공기관(B)
171개	150개 ◦ 혁신도시 이전 : 109개 ◦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 20개 ◦ 개별이전^{주)} : 21개	21개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 15개 ◦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 6개

주) 개별이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의무는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공공기관과 이전 시기와 지역은 다르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바,

개정안은 기이전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의무와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⁵⁾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⁶⁾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 계획의 수립⁷⁾,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필요한 조치 시행⁸⁾, 이주직원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

대한 이주지원비 제공 및 주택 우선 공급⁹⁾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이 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기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현행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의무¹⁰⁾에 더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과 기이전공공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이전공공기관 21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효과는 대전광역시에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0) 2019년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이전공공기관등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기이전공공기관의 본사 소재지 】

본사 소재지(21개)	공공기관
대전광역시(16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광역시(1개)	기술보증기금
충청북도(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청남도(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2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지방 정부 대부분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공공기관 이전 현황

➡ 총 150개 : 혁신도시 109개, 세종시 20개, 개별이전 21개

강 원 (기관:11개, 인원:6,179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 북 (기관:11개, 인원:3,116명)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전 북 (기관:12개, 인원5,300명)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광주·전남 (기관:16개, 인원:7,043명)

-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정보관리원, 농식품인재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평가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제 주 (기관:6개, 인원:752명)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경 북 (기관:10개, 인원:5,561명)

- 우정사업추진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조달품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 구 (기관:10개, 인원:3,262명)

- 중앙교육연수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경 남 (기관:11개, 인원:4,249명)

-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울 산 (기관:9개, 인원:3,143명)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부 산 (기관:13개, 인원:3,457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세 중 (기관:20개, 인원:4,143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개별이전 (기관:21개, 인원:7,035명)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기타	국방대학교(논산), 관세국경인재개발원(천안),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산림항공본부(원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서부발전(태안),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합계(150)		150개 (당초 153 → 변경 150)	
혁신 도시 (109)	계	109개 (당초 112 → 변경 109)	기관 통폐합으로 3개 기관 축소
	부산 (13)	국립해양조사원('12.12), 영상물등급위원회('13.9), 게임물관리위원회('13.10), 영화진흥위원회('13.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4.9), 한국남부발전(주)('14.10), 한국주택금융공사('14.11), 한국예탁결제원('14.11), 주택도시보증공사('14.12), 한국자산관리공사('14.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12)	
	대구 (10)	중앙병역판정검사소('12.12), 한국부동산원('1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13.10), 한국산업단지공단('14.1), 한국사학진흥재단('14.3), 한국가스공사('14.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4.9), 신용보증기금('14.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7), 중앙교육연수원('15.10)	
	광주 전남 (16)	우정정보관리원('13.3), 농식품인재개발원('13.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14.4), 한국콘텐츠진흥원('14.5), 국립전파연구원('1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8), 한국농어촌공사('14.9), 한국전력거래소('14.9), 한국전력공사('14.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4.12), 한전KPS(주)('14.12), 한전KDN(주)('1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7), 한국인터넷진흥원('17.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9.1)	
	울산 (9)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4.2), 근로복지공단('14.3), 한국산업인력공단('14.5), 한국동서발전(주)('14.6), 한국석유공사('14.11), 에너지경제연구원('14.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15.12), 한국에너지공단('19.2)	
	강원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5),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4.12), 한국광해광업공단('15.8), 한국도로교통공단('15.11), 국민건강보험공단('15.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6.12), 국립공원공단('17.4)	(통합) 한국광물자원 공사+한국광해관리 공단 → 한국광해광 업공단('21.9)
	충북 (11)	한국가스안전공사('13.12), 국가기술표준원('1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6), 한국소비자원('14.8), 한국고용정보원('14.9), 법무연수원('1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6.9), 한국교육개발원('1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	
	전북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13.8), 한국국토정보공사('13.11), 한국전기안전공사('14.6), 국립농업과학원('14.7), 농촌진흥청('14.7),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한국농수산대학교('15.2), 국립식량과학원('15.3), 국립원예특작과학원('15.3), 국립축산과학원('15.3), 국민연금공단('1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5.7), 한국식품연구원('17.9)	
	경북 (11)	우정사업조달센터('1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12), 조달품질원('13.12), 대한법률구조공단('14.4), 한국교통안전공단('14.4), 국립종자원('14.7), 한국도로공사('14.11), 한국전력기술(주)('15.8), 농림축산검역본부('15.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폐지) → 국토안전 관리원('20.12) (폐지) 기상통신소 (10.4)
	경남 (11)	중앙관세분석소('13.1), 한국남동발전(주)('14.4), 국방기술품질원('14.5), 중소기업진흥공단('1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3), 한국세라믹기술원('15.3), 한국토지주택공사('15.4), 한국저작권위원회('15.6), 주택관리공단(주)('16.6),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 국토안전관리원('17.12)	(통합) 한국시설안 전공단 → 국토안 전관리원('20.12) ※ 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 시설안전공단
	제주 (6)	국토교통인재개발원('12.12), 국립기상과학원('13.12), 국세공무원교육원('15.9), 국세상담센터('15.9), 공무원연금공단('15.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15.10)	
		20개 (당초 19 → 변경 20)	
세종시 (20)		한국개발연구원('13.12), 한국법제연구원('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14.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14.12), 산업연구원('14.12), 한국교통연구원('14.12), 한국노동연구원('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14.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4.12), 한국환경연구원('14.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5.2), 축산물품질평가원('15.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5.9),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15.9), 국토연구원('17.1), 건축공간연구원('15.8)	(신규지정) 건축공간 연구원 독립법인 승격('20.4)
		21개 (당초 22 → 변경 21)	
개별이전 (21)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수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해산) 재외동포재단

자료: 국토교통부